

## 요 약

- ▶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간 유예한 바 있음.
  -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 반대 및 전면 폐지와 더불어 최고가치(best value)낙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.
- ▶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각 이해 당사자(건설업체, 발주기관, 설계·엔지니어링·감리 용역업체)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.
  -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76.1%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건설업체와 용역업체(감리/설계/엔지니어링)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77.4%의 응답자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음.
  -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건설업체, 발주기관, 용역업체(감리/설계/엔지니어링) 모두 '반대'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더욱이 발주기관에서도 응답자의 87.1%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.
- ▶ 설문조사 결과,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 혹은 축소하고, 그 대신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.
  - 최저가낙찰제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34%, 300억원 이상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(현행 유지) 27%, 발주자 재량권 부여 21.4% 등으로 나타났음.
  -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.8%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'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최고 가치 반영'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.
  - 현행 제도 가운데 최고 가치형 입찰제도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하여 응답자의 22.4%는 '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'을 선택했으며, 21.2%는 '적격심사낙찰제'를 선택함.
  -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발주자가 입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%가 '찬성'하였음.
  - 최고 가치형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시공능력평가 31~171위 수준의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.

## I. 연구 배경

- 현재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 제도는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낙찰제,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으며,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나 대안입찰, 기술제안입찰 등이 선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.
-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, 100억~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2년간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유예한 바 있음.
  -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, 나아가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.
  - 2011년 기준 상위 100위권 건설사들 가운데 현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업체가 30%에 달할 정도로 최근 건설산업 내부의 위기 의식이 높은 상태임.
- 최근 국회에서는 정부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공공공사 발주시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시공사의 기술력과 공사 경험 등을 널리 평가할 수 있는 최고가치(best value)낙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.<sup>1)</sup>
- 본 연구는 건설업체, 발주기관, 엔지니어링(설계) 용역업체 등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공공공사 입찰 제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함.
  - 나아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제도의 개선 방향 및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함으로써, 공공공사 입찰 제도의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.

1) 일례로 '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' 토론회(2012. 8. 13) 등이 개최된 바 있음.